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鍾路區 淨化槽 代行業에 관한 第1號
行政事務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8月 13(日) 13時 10分

場 所 소회의실

議事日程

1.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審査된 案件

1.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面
2. 간사 선임의 건 6面
3.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6面

(13時10分 開議)

○委員長 代理 千相旭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적위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委員長 代理 千相旭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玄孝善委員! 호선하세요.

○玄孝善委員 羅在岩委員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알겠습니다. 玄孝善委員께서 羅在岩委員을 추천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朴鍾植委員! 호선하세요.

○朴鍾植委員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丁昌熙委員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丁昌熙委員을委員長으로 했으면 열심히 할 것으로 丁昌熙委員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잘 알겠습니다. 朴鍾植委員께서는 丁昌熙 현 운영위원장을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丁昌熙委員! 말씀하세요.

○丁昌熙委員 사실 이 정화조 문제는 '93년에도 구청에 강력하게 시정 촉구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고 사실상 현금에 이르기까지도 제대로 시정이 안된 상태이고 또 이번에 적출된 사항 역시도 區廳에서 관리해서 적출 해가지고 파악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조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다 강력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책임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 저는 千相旭委員님을 전적으로 추대하는 바입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代理 千相旭 네. 李萬魯委員! 말씀하세요.

○李萬魯委員 다른 선택은 하지말고 이 세 분중에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代理 千相旭 네. 朴鍾植委員! 말씀해주세요.

○朴鍾植委員 제가 丁昌熙委員을 추천했는데 丁昌熙委員께서 千相旭委員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은 또委員長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간사하고 위원들이 같이 하게되는 거니까 제가 丁昌熙委員 추천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그럼 철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朴鍾植委員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후보 추천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임시 위원장이 돼서 丁昌熙委員께서 저를委員長으로 호선후진한 것은 고맙습니다만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호선후진한 丁昌熙委員님의 양해를 얻어서 저는 후보 탈퇴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입니다」하는委員 있음)

네. 羅在岩委員! 신상 발언하십시오.

○羅在岩委員 羅在岩委員입니다. 저도 '93년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조사도 해보고 했던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이걸 가지고 여러날 고심했던 문제이고 정화조의 변칙 운영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丁昌熙委員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을委員長으로 천거해주신 우리 玄孝善委員님께는 상당히 감사합니다만 좀더 강력하게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분에게 제가 양보

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지금 羅在岩委員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한다면 정화조 문제를 제일 먼저 초대 1회 때 이 문제를 거론하신 분이 丁昌熙委員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이 가장 많고 자료도 많이 갖고계신 丁昌熙委員님이委員長이 되는 것이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시는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인데 朴鍾植委員께서 호선후진다가 철회를 했습니다만 호선후진을 다시 한 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玄孝善委員! 말씀하세요.

○玄孝善委員 사람 몇 되지도 않는데 이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위원장이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부름꾼이 못해요. 이걸 가지고 세 분이 서로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날도 뜨겁고 한데 간단히 무기명 투표로 부치는게 좋겠습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玄孝善委員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 제9조1항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선을 받아서 호선이 종결되면 그분들을 가지고 투표를 하던가 거수를 하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玄孝善委員 지금 세 분이 다 사양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그러니까 朴鍾植委員께서 호선후진하지 않습니까? 그걸 철회하신걸 다시 철회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朴鍾植委員 議席에서 - 회의 원칙대로 합시다. 세 분이 다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丁昌熙委員을 추천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또 羅在岩委員도 사양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玄孝善委員님이 취소발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千相旭委員의 재청을 받아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식으로 합시다. 취소 발언 해주세요.)

○玄孝善委員 저는 아직 취소 발언 하지 않았습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代理 千相旭 네. 李萬魯委員! 말씀하세요.

○李萬魯委員 지금 玄孝善委員이 사실은 아직 委員長을 그동안 좀 말아보지 않았습니니다. 玄孝善委員이 또 파고 들면 강력하게 일을 잘 하실거라고 믿고 또 같은 議員으로서 玄孝善委員을 추천합니다.

○玄孝善委員 저는 아직 몸도 신통치 않고 해서 사양하겠습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그러니까 호선된 후보께서는 전부 사퇴하는 입장이 되니까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원래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거론하신 분이 丁昌熙委員이시고 또 현재 運營委員長으로서 의회에 매일 같이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조회를 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사실 가장 빨리 처리하는 분이 아니냐 해서 임시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丁昌熙委員을 委員長으로 추대해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玄孝善委員 회의진행에 잘못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특별위원회 하나 만드는 걸 가지고 얘기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로 해서 처리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代理 千相旭 회의규칙에 의해서 호선을 받고 하도록 ……

○玄孝善委員 제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는데 위원장 하나 뽑는 것을 가지고 …… 간단히 합시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알겠습니다. 본 임시 위원장이 추천 호선한 丁昌熙委員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委員! 추천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異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후보 추천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

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丁昌熙委員이 추천되었습니다. 丁昌熙委員이 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玄孝善委員 시민행정이 처음이 돼서 잘 모릅니다. 몸도 신통치 못하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羅在岩委員을 추천했고 朴鍾植委員이 丁昌熙委員을 추천했습니다. 해서 朴鍾植委員이 철회를 한걸로 아는데 다시 또 재추천이 있습니까?

○委員長 代理 千相旭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玄孝善委員께서 먼저 羅在岩委員을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朴鍾植委員께서 丁昌熙委員을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 丁昌熙委員께서는 본 임시 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본 임시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발표했고 羅在岩委員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丁昌熙委員께서는 朴鍾植委員의 추천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분 호선된 후보가 모두 사퇴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서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이 받아들여서 재청을 했습니다. 그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으로 성립이 돼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玄孝善委員 만장일치가 되는 겁니까?

○委員長 代理 千相旭 만장일치로 이것이 좋냐 하는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방망이를 친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玄孝善委員 제 생각에는 무기명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委員長 代理 千相旭 아니 호선된 분이 한 분인데 한 분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朴文培委員! 말씀하세요.

○朴文培委員 회의원칙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원칙론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연설하신 부분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丁昌熙委員이 사의를 표명하고 위원장

도 호선을 하셨는데 위원장 역시 사임을 표하고 또 丁昌熙委員을 추천했던 朴鍾植委員이 취소를 하고 이래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특출나게 어느 누구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면 지금 玄孝善委員의 반대 의사에 대해서는 어떤 정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세 분중에 서로 안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委員長은 모두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뛰는데 정화조 건은 냄새가 나서 그러는지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위원장에게 동의하고 싶은데 이게 서로 시선이 엇갈려서 의중을 몰라 표현을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왕에 나온 세 분중에 결정짓는 비밀투표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玄孝善委員님에 대한 제청 발언을 합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代理 千相旭 네, 洪起瑞委員! 말씀하세요.

○洪起瑞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이 특위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건데 위원장 하나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양보를 하였고 특히 丁昌熙委員이 초창기때부터 정화조를 많이 다루었다고 임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丁昌熙委員으로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종결을 짓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비밀투표에 부치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만 委員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朴鍾植委員 議席에서 - 洪起瑞委員님의 동의에 전적으로 재청합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9조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선받는 후보들은 사퇴를 하였고 호선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 임시 위원장이 호선해도 좋으나 하는 동의를 여러분께 구

해서 본 위원장이 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성립이 된 것입니다. 성립이 된 사항을 선포 직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발언은 본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 할 사항입니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되풀이하시면 회의를 계속 못하지요. 공자가 100명이 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호선된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두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있으면 부결해야지요.

○玄孝善委員 몇 건 안되는데 가까운 사람들끼지 얼굴 붉힐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럼 저는 반대합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玄孝善委員님께서서는 후보가 한 분이지만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성립이 됐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玄孝善委員의 동의발언이 후보가 한 분이라도 비밀투표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鄭泰淳委員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성립이 됐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지요? 반대가 없으시면 丁昌熙 후보를 한 분 놓고 특위 위원장을 뽑는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鄭泰淳委員 議席에서 -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후보가 한 분이기에 때문에 무기명 투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玄孝善委員의 재청 발언이 아니지요? 玄孝善委員의 발언은 성립이 안됩니다. 철회하셔야 합니다.

○玄孝善委員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委員長 代理 千相旭 회의록에 기록은 남아 있

지만 성립은 안됐습니다.

○**玄孝善委員** 재청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代理 千相旭** 네, 朴文培委員! 말씀하세요.

○**朴文培委員** 지금 玄孝善委員께서 민주주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羅在岩委員을 委員長으로 천거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계속 지지하는 발언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면 丁昌熙委員에 대한 찬성에 대한 동의까지 나왔고 또 역시 羅在岩委員을 계속 밀고 해서 羅在岩委員을 한 번 받아들여서 동의안까지 나오는가를 한 번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玄孝善委員의 발언에 대한 결과를 그렇게 해서 같음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朴文培議員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임시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후보 추천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玄孝善委員** 제가 말씀드리지요. 저는 추천 발언을 했는데 아직 취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羅委員님께서 사임을 하신 겁니까?

○**羅在岩委員** 물정을 아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놓고 玄孝善委員이 추천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사실 정화조로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걸 잘 아는 분이 구민의 권익을 위하는 분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玄孝善委員** 委員長님!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정화조 특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도 '93년, '94년 이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썼고 토론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이냐 다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것 아닙니다. 이거 내년 5월 달이 기한입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약식재판 벌금형 나온 것 240만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누구라도 못할 게 없습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잠깐 玄孝善 기타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속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의 발언을 전부 다 청취하고 발언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란 것은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고 한데 순서를 무시한 발언을 앞으로 삼가해주시기를 제가 심심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호선된 위원 한 분을 선택하기 직전입니다. 반대나 만장일치냐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라고 하고 반대 의견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議決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玄孝善委員** 제가 반대합니다.

○**委員長 代理 千相旭** 丁昌熙委員을 정화조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반대 의사가 계신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舉手 表決)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세 분, 반대 세 분입니다. 그러면 가부 동수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위원장은 丁昌熙委員 쪽을 거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종로구의회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 丁昌熙委員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 위원장으로 본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되신 丁昌熙 特別委員長님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千相旭委員長代理, 丁昌熙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丁昌熙** 千相旭委員님! 임시 위원장으로서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사실 정화조 문제만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 누구라 하더라도 다 위원장으로 족하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또 제가 성격이 다소 유약하기 때문에 이중차대한 일을 혹시나 잘못 그리칠까와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재추천을 해서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굉장히 한쪽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는 그 책임이 너무 중차대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임시 위원장으로부터 이런 신임을 받은 것과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추대해 주신 것을 크게 마음속 깊이 아로새기면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떠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여 국민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위원장직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으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幹事 選任의 件

(13時 40分)

○委員長 丁昌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겠습니다.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朴文培委員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朴文培委員 議席에서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사를 유능한 우리 鄭泰淳委員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은 사양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丁昌熙 鄭泰淳委員을 다시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鄭泰淳委員 議席에서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달에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특위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萬魯委員 議席에서 - 鄭泰淳委員님이 수고를 해주셔야지요.)

(○鄭泰淳委員 議席에서 - 저는 시간이 안되어서 우리 朴文培委員님이 幹事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丁昌熙 다른 위원님은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朴文培委員님을 다시 추천하신거죠? 그러면 일단 사의 표명을 하시고 鄭泰淳委員님을 추천하셨고 鄭泰淳委員님도 사의 표명을 하시고 朴文培委員님을 다시 재추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재청, 삼청까지 받은 委員님은 朴文培委員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천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朴文培委員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朴文培委員님이 幹事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幹事로 선출되신 朴文培委員님은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培委員 대단한 위원이 아닌 똥 푸는 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간사를 맡아달라는 위원님들의 간청, 재청, 삼청이 있다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의 위원장을 보필하고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丁昌熙 朴文培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3.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3時 45分)

○委員長 丁昌熙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가 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사 목적과 조사의 범위, 조사의 기간 및 일정, 조사 요령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千相旭委員 이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은 처음 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조사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설명할 사항이 못되는데 검토 의견만)

○千相旭委員 검토의견도 좋고 이 몇장에 있는 걸 가지고 금방 알 수도 없고.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서 이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 감사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행하는 사항이지만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행하는 것이 감사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계획서(안)은 조사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 사항이 정화조 관련조례의 미비점 등에 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 및 허가업체의 감독 적정성에 대한 사항하고 또 수거량과 허가업체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물량 판단 등에 대한 사항하고, 정화조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적절히 행정 처분을 하였는지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오늘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승인이 되면 오늘부터 9월 1일까지는 관련자료를 관계과에서 징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9월 1일까지 관계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징수를 하게 되겠고 9월 2일날은 우리 종로의 환경개발이 정화조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환

경개발 대표하고 그 다음에 시민국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가르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업체 대표를 소환해서 보고를 듣고 시민국장으로부터 관련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그래서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9월 7일까지는 우리가 관련업체 대표가 보고한 사항이라든지 시민국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거나 현장을 확인 하거나 이렇게 다시 보충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모든 근거로 해가지고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관계국장, 관련업체 대표를 참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사는 전부 위원회 회의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질의 답변이 끝나고 더 보충할 것이 없으면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채택된 보고서는 다음 임시회의 때 위원장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조사항목이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충 이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련사항이 아니면 조사항목이 조사 착안점이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지금 외관적으로 볼 때는 형식상으로는 우선 조례가 특정업자를 비호한다든지 독점체제를 형성시킨다든가 이렇게 조례 자체에 문제가 없느냐, 또 조례에 지금 보면 허가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 잘못될 경우에는 그런데 한 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벌칙조항인 허가취소 조항으로 청소 공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규정이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과태료 규정으로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제도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사항을 제도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해보고, 두번째 인허가 문제입니다. 이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한 후에 재계약이 되느냐 이런 계약 허가사항과 관련해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차고지를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되고 장비는 무슨무슨 장비를 갖추어야 되고 인원은 어떻게 두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허가업체에서 주는 피해 원인이 직원들에 대한 급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팀으로 지낼 수 있게끔 하는 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회사의 재정 전반에 걸쳐서도 우리가 판단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문제까지 했고, 그 다음에 관련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접수된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몇몇 대형업소를 정해서 거기에 가서 수용가의 의견 정취 절차 등도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이 정도로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 각자 자료에 의해서 연구를 하시면 더 깊이 파악하실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羅在岩委員 議席에서 - 지금 아까 우리 표현을 묻고 싶었는데 발의 동의라고 할 때 정화조의 '발동 요구의 건'이라고 했던 말이죠. 그러면 조사권 발동 요구 이것은 지금 어떠한 정도로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하자면 어떻게 차제에 이것을 삭제해 해도 될 부분은 꼭 구태여 발동이라는 것을 넣어서 법적인 문구도 아니더라 말이야. 행정적으로 써야 될 문구를 여기에다 넣어서 우리 의회에 조례 자체의 제목으로 넣는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든지 해야지 아까 공부를 안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내가 사실 5년 동안 좀 들은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왕 모든 서류도 그러면 '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 계획서(안)' 이렇게 나와야지 '조사계획서'라고 해놓고 지금 이 발동 요구의 건은 어디로 갔는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특정 사안이 있을 경우에 특위 구성하자, 특위 구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위는 조사권 발동이 되면 그 조사사항에 대해서 그냥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일임시킬 것이냐 이런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죽 의회 전체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조사권 발동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특위 구성 요구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권 발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회의 권위의 표시입니다. 왜 스스로 격에서 비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조사권 발동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강성구'가 지은 '의회 사무편람'에 조사권 발동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한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자신이 조금도 비하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羅在岩委員 議席에서 - 좋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조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죽 나왔습니다. 조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목적 달성을 못했는가? 그리고 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을 했을 때 목적 달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이게 조사계획서라고 하는 표현이 조사계획서는 원래 규칙 우리 조례상으로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그 조사권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경우에 발의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행정사무조사 요구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 이 계획서 채택하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권 활동계획서(안)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사무 편의상 또는 의회 소집 등 어떤 처리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전혀 거기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의회 큰 권한을 구태여 비하시켜서 조사계획서(안)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羅在岩委員 議席에서 -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사권 발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명백히 해서 알려주고 해줘야지 우리 종로구 의회 조례에도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13조에도 없었어요. 조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지 조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몰라서 묻는 얘기를 구김없이 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지. 앞으로는 발동 요구의 건으로 모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얘깁니까?)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앞으로 특위 구성이라고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가 됩니다. 조사권 발동 요구 내용을 의장이 판단해서 기존의 상임위원회를 활용해서 조사를 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특별히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安哲柱議員이 조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의 참여로 자연히 특위 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議長 金憲中 傍聽席에서 - 특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건을 맡아 가지고 조사권이냐 그냥 특위 구성이다 일반적으로 특위 구성이다. 일반적으로 특위 구성하면 무슨 정화조 특위다 무슨 건축문제 특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나왔느냐 발동 문제가. 진작 내가 월요일날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온 걸 보니까 지금 마냥 조사 발동이라는 소리를 안 넣었더라고. 내가 의장단 회의를 갔을 때 모의원이 조사 발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서 '지자체' 책에 보면 조사 발동이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아침에 와가지고서 사무국장하고 모두 집합을 시켰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자 安哲柱議員이 왔는데 내가 安哲柱議員한테 부탁

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맞느냐 안맞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무부나 어디나 蔣課長이 애를 써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조사 발동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우리끼리 옥신각신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다 뭐냐면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누가 의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고충을 한 번 얘기하겠어요. 이게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름으로써 다듬음으로써 계속 합의가 이루어져서 만장일치 이의없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저 누구든지 말하기 좋은 사람은 하고 또 아까 여기 나와서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도 이것은 우리가 좀 자중해 주십시오. 조금 미약한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을 불러서 물어본다든가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보고서 이렇게 해야지 방청석에도 있고 행정기관들 다 있는 데에서 마치 의장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또 의장을 꼬집어서 한 번 이런 말을 해보고 싶은 그런 질의가 여태까지 계속 되었었거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나도 오늘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런 회의 때도 해주시고 나도 얼핏 나온 말이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말 잘하고 나와서 그냥 그냥 다음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의장을 하든 상임위원장을 하든 나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괴로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일을 하자고 우리 위원회가 되고 했으니까 내가 잘못된 것은 나한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한 번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서 다 끝나고 방망이 친 다음에 불쑥불쑥 손을 들어 가지고 장구한 연설을 한다든가 하는 점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발동이라는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羅在岩委員 議席에서 - 알았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분명히 오늘 발의한 두 분에게 내가 의원에게 묻는다고 했었어요. 이왕 하신 김에 蔣課長님! 앞으로 우리가 조사할 일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간선도로 지장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도 그것도 발동요구의 건으로 해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자연스러운 조사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서 조사할 것이 있고 물의를 빚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 할 때 그런 조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발동이라는 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데 그래서)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자연스러운 것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입니다. 그것은 특위가 조사권 발동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羅在岩委員 議席에서 -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행정부에 대한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사권을 발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의정활동의 조사 사항하고는 달리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丁昌熙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의가 없으면 계획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조사계획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參照)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 목 적

관내 정화조 청소업(주-환경개발)의 횡포(바가지

요금, 독점체제)와 관련 제도적, 실제적 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하고 제도상, 운영상 미비점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의 범위

- 종로구 청소행정 중 정화조 청소업 관련사항 -

- 관련조례의 미비점 등에 대한 조사
- 인허가 및 허가업체의 감독 적정성
- 수거량과 허가업체수의 적정 여부
- 민원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분 여부
- 기 타

□ 조사 기간 및 일정

○ 기간 : '96. 8. 14 ~ '96. 9. 13

○ 일정

- '96. 8. 14 ~ '96. 9. 1 자료준비
- '96. 9. 2 해당국, 해당업체 현황청취
- '96. 9. 2 ~ '96. 9. 7 관련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 '96. 9. 9 ~ '96. 9. 10 질의 및 답변
- '96. 9. 11 ~ '96. 9. 13 보고서 작성
- '96. 9. 13 이후 임시회의시 본회의의 보고

□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 위원장 : 정창희
- 간 사 : 박문배
- 위 원 : 박종식, 정태순, 나재암, 천상욱, 현효선, 이만로, 홍기서
- 보조직원: 전문위원 장소수, 의사계장 오익환, 박종수, 이윤식, 전 웅, 구상미, 유연숙, 김세영, 최기노

□ 조사 요령

○ 조사 방법

- 서류검증 및 질의
- 해당업체 현지확인 및 관련서류조사

○ 조사 항목

조 사 항 목				
분 야	항 목	내 용		
제 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 독점적, 특혜적 규정에 대한 대응태세 (제10조, 제17조) ○ 벌칙조항으로 허가취소 조항은 청소공백이 우려되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벌금규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태세		
인 허가	허가 절차 허가업체(현장확인 및 증인신문)	○ 연장허가, 계약 등의 타당 여부 ○ 신규허가 신청에 대한 대응자세가 타당하였는가 ○ 허가조건대로 감독에 철저하였는가 ○ 허가조건대로 차고지 장비·인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문제는 없는가 ○ 구청의 제반 지시 이행상태는 어떠한가 ○ 동대문경찰서 혐의사실에 대한 대응태세와 이에 대한 자체 재발방지 대책은		
민 원 발 생	발생민원에 대한 적정 대응	○ 민원접수체계는 적정한가 ○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조사가 신속하고 적절한가 ○ 발생민원에 상당한 행정처분을 하였는가		
기 타				
수 신 : 종로구의회의장 참 조 : 의회사무국장 제 목 : 서류제출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별첨 2. 제출서류 부수 : 15부 3. 제출일시 : 1996. 9. 2 4. 제출장소 : 구의회사무국 1996년 8월 일 종로구정화조대행업조사특별위원회		
서 류 제 출 목 록				
연번	서 류 제 출 명		주 관 부 서	비 고
1	환경개발(주)현황:임직원 현황, 보수지급현황, 장비, 차고지등		청 소 과	
2	분뇨관련 50인조 이상의 현황: 연번, 소재지, 성명, 인조수, 청소량, 청소일등		"	
3	분뇨관련 행정처분 현황 ('95~현재)		"	
4	분뇨관련 민원접수대장 사본 ('95~현재)		"	
5	분뇨관련 민원접수공문 사본 ('95~현재)		"	
6	'96. 9월중 정화조 청소 실시대상 및 계획		"	
10	허가건물중 50인조 이상의 정화조 설치 현황 ('94. 1. 1~현재)		건축과, 주택과	
11	건축 연면적 1,600㎡ 이상 건물현황 및 동 건물의 오수·정화시설 설치 및 준공현황 ('94. 1. 1~현재)		건축과, 주택과	

수신 : 종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제 목 :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일시 : 계획서 참조
2. 보고장소 : 각 특별위원회 회의실
3. 보고내용 : 소관업무 사항

1996년 8월 일

종로구정화조대행업조사 특별위원회

수신 : 종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제 목 : 관계공무원(참고인)출석·답변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대상 : 관계공무원 및 해당업체
2. 출석일시 : 계획서 참조
3. 출석장소 : 각 특별위원회 회의실

1996년 8월 일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조사 특별위원회

수신 : 종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제 목 : 현장확인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준비일시 : 계획서 참조
2. 준비장소 : 구청광장 앞
3. 준비사항 : 차량 2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996년 8월 일

종로구정화조대행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제1차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4分 散會)

○出席委員 9人

丁昌熙 朴鍾植 鄭泰淳 羅在岩 千相旭
玄孝善 李萬魯 朴文培 洪起瑞

○委員아닌 出席 議員

金憲中

○出席專門委員

蔣 昭 秀